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

<b>분 야</b>	모든 분야
<b>관련의무</b>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이행요건(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현지주재(제9.5조)
<b>유보내용</b>	<p><u>투자</u></p> <p>한국은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그러한 조치는 제18장(투명성)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p> <p>이 유보항목은 과거 민간기업이었으나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결과로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p>이 유보항목의 목적상,</p> <p>공기업에는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도 포함된다.</p>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의 부속서 I 및 부속서 II 상 약속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한국은 정부권한의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분 야

토지취득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의 토지 취득은 계속 허용된다.

1. 외국인토지법 제2조상의 외국법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2. 다음의 정당한 사업목적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상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나 외국법인의 지점인 경우. 다만,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나. 고위경영진의 주거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그리고

다. 해당 법에 규정된 토지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한국은 외국인에 의한 농지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총포·도검·화약류 및 유사 물품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이행요건(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 및 석공의 제조·사용·판매·보관·운반·수입·수출 그리고 소지를 포함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 및 석공 분야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취약집단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최혜국대우(제8.4조 및 제9.3조) 이행요건(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소수 민족과 같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집단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국가소유의 국가전자/정보시스템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현지주재(제9.5조) 이행요건(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정부 고유의 비밀정보 또는 정부의 규제기능 및 권한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록한 모든 국가소유의 전자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사회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최혜국대우(제8.4조 및 제9.3조)  
현지주재(제9.5조)  
이행요건(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 서비스인 한도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복지, 공공훈련, 보건, 그리고 교육.

분 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9.4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및 GATS/SC/48/Suppl.3/Rev.1)에 기술된 대로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으로만,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다음의 변경을 조건으로 한다.

가. “모든 분야” 로 기술된 유보항목은 제외하고, 한국 부속서 I의 유보항목 중 관련의무란에 시장접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유보항목의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서비스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제한 없음(None)” 이라고 기재하고, 서비스공급형태 4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고 기재한다.

나. “모든 분야” 로 기술된 유보항목은 제외하고, 한국 부속서 I상의 유보항목 중 시장접근 의무에 대한 제한사항을 기술한 유보항목의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항을 해당 서비스공급형태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기재한다. 그리고

다. 부록 II-가에 열거된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부록 II-가에 적시된 바와 같이 수정된다.

이러한 변경은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의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GATS 제16조제2항번호 관련 어떠한 제한사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의 시장접근 열에 “제한 없음(None)”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제9.6조(비합치 조치)에 의하여 수정된 대로의 제9.5조(현지주재)가 적용된다는 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분 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최혜국대우(제8.4조 및 제9.3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항공

나. 수산, 또는

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분 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서비스

관련의무 최혜국대우(제8.4조 및 제9.3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편방향위성전송(DTH) 및 직접방송위성(DBS)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오디오 방송 서비스와 관련, 상호주의 조치의 적용을 이유로 또는 라디오 스펙트럼의 공유, 시장접근 보장 또는 내국민대우와 관련한 국제 협정을 통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운송 서비스 - 철도 운송

관련의무

최혜국대우(제8.4조 및 제9.3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철도운송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환경서비스 - 음용수 처리 및 공급 서비스, 생활폐수 수집 및 처리 서비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서비스, 위생 및 유사 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환경영향평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이행요건(제8.9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다음의 환경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위생 및 유사 서비스, 그리고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환경영향평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이 유보항목은 관련 법 및 규정에서 상기 서비스에 대하여 사적 공급이 허용되는 한도에서 민간 당사자 간 계약에 따른 해당 서비스의 공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 야	원자력 에너지 - 원자력 발전, 핵연료의 제조 및 공급, 핵물질,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처분(사용 및 조사된 핵연료 처리 및 처분을 포함한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 모니터링 서비스, 핵에너지 관련 서비스, 설계·유지 및 보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이행요건(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원자력에너지 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에너지 서비스 - 원자력 발전은 제외한 발전, 송전·배전 및 전력 판매, 전력사업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이행요건(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은 발전·송전·배전 및 전력 판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의 에너지산업(전력)과 관련된 유보항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전력산업에서의 외국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p> <p>이 유보항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제8.9조제1항바호와 불합치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p>

분 야	에너지서비스 - 가스 산업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이행요건(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p data-bbox="612 524 1007 562"><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 data-bbox="612 607 1442 719">한국은 천연가스의 수입과 도매 유통, 그리고 인수기지와 전국 고압 주배관망의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 data-bbox="612 775 1442 889">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의 에너지산업(가스산업)과 관련된 유보항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가스산업에서의 외국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p>

분 야	유통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중개서비스, 도매 및 소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이행요건(제8.9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미가공 농산물, 산 동물 및 식음료에 대한 중개서비스  나. 곡물·육류·가금·곡분·홍삼 및 비료에 대한 도매업 서비스, 그리고  다. 쌀, 인삼 및 홍삼에 대한 소매서비스

분 야	운송 서비스 - 도로여객운송 서비스(택시 서비스 및 정기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최혜국대우(제8.4조 및 제9.3조) 이행요건(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택시 서비스 및 정기 도로여객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운송 서비스 - 도로화물운송 서비스(쿠리어 서비스와 관련된 도로운송 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의무	최혜국대우(제8.4조 및 제9.3조) 이행요건(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p data-bbox="612 564 1007 595"><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 data-bbox="612 647 1445 806">국제해운회사에 의한 컨테이너화물 도로운송(카보타지는 제외한다)과 쿠리어 서비스와 관련된 도로운송 서비스는 제외하고, 한국은 도로화물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분 야	운송 서비스 - 내륙주운 서비스 및 우주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최혜국대우(제8.4조 및 제9.3조) 이행요건(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내륙주운 서비스 및 우주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운송 서비스 - 저장 및 창고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은 농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과 관련된 저장 및 창고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분 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비독점 우편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군복무자 또는 이와 동등한 신분을 지닌 인이 우체국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나.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부처에 속하는 차량 정수의 결정과 우체국에 그 차량을 배정함에 있어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우정당국은 국내법에 따라 서장의 수집, 구분 및 배달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유보한다. 이 독점적 권한은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에 근거하여 어떠한 방식 또는 형태로도 영향 받지 아니한다. 한국 우정당국의 그러한 배타적 권리는 그 우편망에 대한 접근과 이의 운영에 대한 권한을 포함한다.

분 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최혜국대우(제8.4조 및 제9.3조)  
이행요건(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1. 한국은 방송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다음과 같이 보장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국 콘텐츠를 포함하여야 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채널별로 매 분기 방송시간의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채널별로 매 분기 방송시간의 4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 그리고

다.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채널별로 매 분기 방송시간의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

방송사업자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가. 영화: 채널별로 연간 방송시간의 2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이하

나. 애니메이션: 채널별로 연간 방송시간의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 그리고

다. 대중음악: 채널별로 연간 방송시간의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장르별 1개국 외국 콘텐츠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매 분기 방송시간은 채널별로 장르별 전체 외국 콘텐츠에 대한 매 분기 방송시간의 6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개국 콘텐츠 한도라 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위성방송사업자"는 외국에 등록된 위성의 설비를 이용 또는 임차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분 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 방송 및 통신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최혜국대우(제8.4조 및 제9.3조) 이행요건(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은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b>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b>란 해당 서비스 공급자가 소유 또는 통제(임차를 포함한다)하는 전용 전송 용량을 통하여 최종 이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말하며, IPTV와 양방향 방송을 포함한다.</p>

분 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관련의무	최혜국대우(제8.4조 및 제9.3조) 이행요건(제8.9조)
유보내용	<p data-bbox="612 434 1007 472"><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 data-bbox="612 517 1442 723">한국은 영화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특혜를 주는 어떠한 공동제작 약정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공동제작 약정에 따라 제작된 공동제작물에 부여될 수 있는 공식 공동제작물 지위는 공동제작 약정의 대상이 되는 작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p>

분 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이행요건(제8.9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방송 또는 시청각 프로그램이 한국 콘텐츠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사업서비스 - 부동산 서비스(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이행요건(제8.9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는 제외한 부동산 개발, 공급, 관리, 판매 및 임대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사업서비스 - 지급불능 및 법정관리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p data-bbox="612 483 1007 515"><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 data-bbox="612 566 1441 640">한국은 지급불능 및 법정관리서비스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 data-bbox="612 692 1441 848">한국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기업구조조정조합, 그리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를 포함한 기업구조조정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분 야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최혜국대우(제8.4조 및 제9.3조)  
이행요건(제8.9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의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콘텐츠 또는 그 장르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쉽게 이용 가능하지 아니하다고 한국 정부가 판단할 때, 한국은 한국 소비자들이 그러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거부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 소비자를 겨냥한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와 관련하여, 한국은 그러한 콘텐츠의 이용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위 문단에 의거하여 채택되는 어떠한 조치도 제18장(투명성)의 규정과, 적용가능한 경우 제9.8조(규정의 개발 및 적용에서의 투명성)에 따라 시행되고,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하며, 필요 이상으로 교역 제한적이거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전송유형에 상관없이 스트리밍 오디오 콘텐츠, 영화 또는 기타 비디오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이 협정 발효일 현재 방송법에 정의된 방송 서비스나 부속서II 한국의 유보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통신서비스 유보항목에 정의된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분 야	사업서비스 - 지적측량 서비스 및 지적도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은 지적측량 서비스 및 지적도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분 야	사업 및 환경 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 인증 및 등급판정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 인증 및 등급판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사업서비스 - 농업, 수렵, 임업 및 어업 부수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이행요건(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은 유전적 개량, 인공수정, 벼 및 보리 도정,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과 관련된 제반 활동 등을 포함한 농업, 임업 및 축산업 부수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한국은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에 의한 농업, 수렵, 임업 및 어업 부수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분 야

어업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한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행위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신문 발행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신문의 발행(인쇄 및 배포를 포함한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교육서비스 - 유아, 초등, 중등, 고등, 성인 및 기타 교육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최혜국대우(제8.4조 및 제9.3조)  
이행요건(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유아·초등 및 중등교육, 의료 및 보건관련 고등교육, 유아·초등 및 중등교원양성 고등교육, 법학전문대학원, 성인교육, 모든 교육 수준의 원격교육, 그리고 기타교육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사회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최혜국대우(제8.4조 및 제9.3조) 이행요건(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 영화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최혜국대우(제8.4조 및 제9.3조) 이행요건(제8.9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p data-bbox="612 560 1007 595"><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 data-bbox="612 645 1442 725">한국은 영화의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분 야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 박물관 및 기타 문화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이행요건(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p data-bbox="612 564 1010 595"><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 data-bbox="612 647 1445 766">한국은 문화재의 발굴, 감정 또는 매매를 포함한 문화재의 보존, 복원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분 야	기타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유보내용	<p><u>투자</u></p> <p>한국은 농어촌지역 관광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분 야	법률서비스 - 외국법자문사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1. 한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sup>1</sup>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어떠한 유형으로라도 한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자격 부여·승인·등록·허용 및 감독 그리고 그 밖의 요건에 대한 제한<sup>2</sup>

나.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한국 변호사·법무회사(로펌)·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와 동업·상사연합·제휴 또는 법적 유형을 막론하고 그 밖의 어떠한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대한 제한

다.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한국 내에서 한국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를 고용하는 데 대한 제한, 그리고

라. 외국법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실체의 이사회 의장에 대한 것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콜롬비아 법무회사(로펌)가 한국에 대표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콜롬비아에서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법에 관하여 한국

<sup>1</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시입국을 위해서는 상업적 주체가 요구된다.

<sup>2</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한"은 그러한 유형의 법률서비스를 한국에서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포함한다.

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나. 이 협정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한국 법무회사(로펌)와 특정한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 이 협정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콜롬비아 법무회사(로펌)가 한국 법무회사(로펌)와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국은 그 합작투자기업의 의결권 또는 지분 비율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합작투자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한국 변호사를 파트너 또는 소속 변호사로 고용할 수 있다.

3. 한국은 최소한 제2항에서의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를 유지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콜롬비아 법무회사(로펌)**란 콜롬비아법에 따라 설립되고 본점 사무소가 콜롬비아 내에 있는 법무회사(로펌)를 말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란 외국에서 한국 변호사에 상응하는 법률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모든 인을 말한다.

분 야	전문직서비스 - 외국공인회계사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회계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 내에서 회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외국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국내적으로 허가를 취득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한 외국공인회계사의 사무소는 한국 내에 설립되어야 한다.

분 야 전문직서비스 - 외국세무사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현지주재(9.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소유권, 파트너십, 임원 및 이사의 국적 및 서비스 제공 범위를 포함하여 세무사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에서 세무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외국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국내적으로 허가를 취득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한 외국 세무사의 사무소는 한국 내에 설립되어야 한다.

분 야	사업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9.2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통제되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수출 및 재수출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인만이 그러한 물품,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의 수출 또는 재수출을 위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분 야	운송서비스 - 해상여객운송과 연안해상운송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최혜국대우(제8.4조 및 제9.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이행요건(제8.9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은 아래 조치를 포함하여 국제해상여객운송 서비스의 제공, 연안해상운송 및 한국 선박의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국제해상여객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획득하여야 한다. 면허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한다.</p> <p>연안해상운송은 한국선박을 위해 유보된다. 연안해상운송은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간 해상운송을 포함한다. <b>한국 선박</b>이란 다음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한국 정부, 공기업 또는 국토해양부 산하에 설립된 기관이 소유한 선박</li> <li>나. 한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li> <li>다. 한국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한 선박</li> <li>라. 한국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책임임원)가 한국 국민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한 선박.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대표자가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li> </ul>

## 부록 II-가

다음 분야의 경우,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 (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그리고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b>연구개발 서비스:</b> 가.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  나. 사회과학 및 인문학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  다. 학제 간 연구개발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서비스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b>시장조사 및 대중여론 조사 서비스</b>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
<b>광업 부수 서비스</b>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
<b>포장서비스</b>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
<b>컨벤션 대행 서비스 이외의 컨벤션 서비스</b>	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다음 분야의 경우,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 (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그리고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p><b>관광 및 여행관련 서비스:</b></p> <p>가. 엔터테인먼트가 없는 음료 제공 서비스</p> <p>철도 및 항공운송 관련 시설의 엔터테인먼트가 없는 음료 제공 서비스 제외</p> <p>나. 여행 대행 서비스</p> <p>다. 관광객 안내 서비스</p>	<p>서비스 공급형태 1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p>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p>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오직 여행사만이 관광객 안내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된다"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p>